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0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황 희·박지원·어기구

이용선 • 한민수 • 안규백

이기헌 · 김준형 · 정성호

차지호 • 이학영 • 문진석

박수현 • 민홍철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 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생활"을 "성생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u>성생활</u> 등	성생활, 지
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	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	<u>신체적 특징</u>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